

4. 당현천 폐천부지 및 지형도면의 고시

「하천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따라 폐천부지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 등)를 서울특별시(하천관리과) 및 각 하천의 관할지역에 해당하는 자치구청 관리부서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폐천부지는 하천 전 구간에 산재하여 위치하고 있는바, 구간의 기점·종점은 하천의 기점·종점을 기재 하였고, 보전·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은 국·공유지에 한함.

하천명	하천 등급	폐천부지		면적 (m ²)		보전·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발생 연월일
		기 점	종 점	당초	변경		
당현천	지방 하천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산155-1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중량천(국가) 합류점	35,943	36,945	보전-현상태이용 하천환경보전 활용	고시일

첨부서류 : 1. 폐천부지등이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폐천부지등이 표시된 지형도면(1:1,500)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2호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11호(2005.12.22.)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 부문-영등포지역) 변경결정 및 영등포1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8호(2010.01.21.)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71호(2013.01.03.)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26호(2015.07.30.)로 정비구역 해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8호(2016.01.14.)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48호(2017.04.27.)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77호(2017.05.25.)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80호(2017.08.03.)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변경)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형	영등포구 영등포동 2·5·7가 일원	144,507.7	증) 86.3	144,594.0	

※ 변경사유 : 영등포1-4구역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나. 재정비촉진계획의 목적(변경없음)

다.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연도(변경없음)

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변경)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명 칭	면적(㎡)			비율(%)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44,507.7	증) 86.3	144,594.0	100.0	
도시계획 시설	소 계	49,455.9	증) 46.3	49,502.2	34.2	
	도 로	37,873.9	증) 45.6	37,919.5	26.2	
	광 장	1,446.0	－	1,446.0	1.0	
	공 원	8,427.3	감) 3.4	8,423.9	5.8	
	공공공지	1,708.7	증) 4.1	1,712.8	1.2	
주 상 복 합		59,796.7	증) 40.0	59,836.7	41.4	
상 업 복 합		32,257.1	－	32,257.1	22.3	
종 교 시 설		2,998.0	－	2,998.0	2.1	

※ 변경사유 : 영등포1-4구역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2) 인구·주택 수용계획 (변경없음)

3)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

구 분	개 소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도 로	16	37,873.9	증) 45.6	37,919.5	
공 원	2	8,427.3	감) 3.4	8,423.9	
광 장	1	1,446.0	-	1,446.0	
공공공지	1	1,708.7	증) 4.1	1,712.8	
주차장(환원)	1	860.8	-	860.8	

※ 변경사유 : 영등포1-4구역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존계획 (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특 성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문화공원	영등포동5가 43-3 일대	5,464.5	-	5,464.5	도시의 문화적 특징을 활용, 만남의 장소, 지역 중심	
역사공원	영등포동7가 155-22 일대	2,962.8	감) 3.4	2,959.4	상산전 보전	

※ 변경사유 : 영등포1-4구역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5) 교통계획 (변경없음)

6) 경관계획 (변경없음)

7)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변경)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사업의 종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7개 구역)			144,507.7	증) 86.3	144,594.0	-	
재 정 비 촉 진 구 역	영등포1-2 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동7가 76-5일대	5,392.0	-	5,392.0	도시환경 정비사업	
	영등포1-3 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동7가 29-1일대	8,407.0	-	8,407.0	도시환경 정비사업	
	영등포1-4 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동7가 145-8일대	58,335.8	증) 86.3	58,422.1	도시환경 정비사업	
	영등포1-11 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동5가 30일대	17,391.8	-	17,391.8	도시환경 정비사업	
	영등포1-12 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동5가 22-3일대	16,256.0	-	16,256.0	도시환경 정비사업	
	영등포1-13 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동5가 32-8일대	27,065.1	-	27,065.1	도시환경 정비사업	
	영등포1-14 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동5가 34-16일대	11,660.0	-	11,660.0	도시환경 정비사업	

※ 변경사유 : 영등포1-4구역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8) 용도지역 변경계획 (변경)

구역명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계	144,507.7	증) 86.3	144,594.0	100.0	
	준주거지역	103,699.9	증) 86.3	103,786.2	71.8	
	일반상업지역	40,807.8	—	40,807.8	28.2	
영등포1-2 재정비촉진구역	계	5,392.0	—	5,392.0	100.0	
	준주거지역	433.0	—	433.0	8.0	
	일반상업지역	4,959.0	—	4,959.0	92.0	
영등포1-3 재정비촉진구역	계	8,407.0	—	8,407.0	100.0	
	준주거지역	1,017.2	—	1,017.2	10.6	
	일반상업지역	7,389.8	—	7,389.8	89.4	
영등포1-4 재정비촉진구역	계	58,335.8	증) 86.3	58,422.1	100.0	
	준주거지역	58,335.8	증) 86.3	58,422.1	100.0	
	일반상업지역	—	—	—	—	
영등포1-11 재정비촉진구역	계	17,391.8	—	17,391.8	100.0	
	준주거지역	2,743.9	—	2,743.9	8.9	
	일반상업지역	14,647.9	—	14,647.9	91.1	
영등포1-12 재정비촉진구역	계	16,256.0	—	16,256.0	100.0	
	준주거지역	2,444.9	—	2,444.9	8.7	
	일반상업지역	13,811.1	—	13,811.1	91.3	
영등포1-13 재정비촉진구역	계	27,065.1	—	27,065.1	100.0	
	준주거지역	27,065.1	—	27,065.1	100.0	
	일반상업지역	—	—	—	—	
영등포1-14 재정비촉진구역	계	11,660.0	—	11,660.0	100.0	
	준주거지역	11,660.0	—	11,660.0	100.0	
	일반상업지역	—	—	—	—	

※ 용도지역 변경은 사업시행을 전제로 계획된 사항이므로, 용도지역 변경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고시 예정

※ 변경사유 : 영등포1-4구역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

가) 기정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건 축 시 설 계 획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주된용도	용적률 (%)	건폐율 (%)	층수(지하) /높이	주거 연면적 비율(%)		
기정	합계	144,507.7	-	95,051.8	-	-	520이하	54이하	-	-		
	1-2	5,392.0	-	3,930.4	영등포동7가 76-5 일대	판매, 근린생활, 업무, 주거	610이하	52이하	32F(4)/120m	50미만		
	1-3	8,407.0	-	5,767.1	영등포동7가 29-1 일대	판매, 근린생활, 업무, 주거	610이하	55이하	31F(5)/120m	50미만		
	1-4	58,335.8	1-4-1	35,507.2	영등포동7가 145-8 일대	근린생활, 업무, 주거	370이하	52이하	35F(3)/120m	90미만		
			1-4-2	2,998.0	영등포동7가 148-18 일대	종교시설	관계법령에 따름			-		
	1-11	17,391.8	-	11,981.1	영등포동5가 30 일대	판매, 근린생활, 업무, 주거	770이하	58이하	38F(5)/130m	50미만		
	1-12	16,256.0	-	10,578.5	영등포동5가 22-3 일대	판매, 근린생활, 업무, 주거	750이하	59이하	38F(5)/130m	50미만		
	1-13	27,065.1	-	17,234.9	영등포동5가 32-8 일대	판매, 근린생활, 업무, 주거	398이하	59이하	33F(4)/99m	70미만		
	1-14	11,660.0	-	7,054.6	영등포동5가 34-16 일대	판매, 근린생활, 업무, 주거	380이하	55이하	24F(4)/80m	70미만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		• 전용면적 85㎡ 이하 - 세대수 × 60% 이상 - 주거연면적 × 50% 이상 • 임대주택 (200세대 이상) - 전용면적 40㎡ 이상 - 세대수 × 17% × 주거연면적비율 이상 또는 주거연면적 × 10% × 주거연면적비율 이상				구 분	전 용 면 적	세 대 수 (세 대)	비 율 (%)	비 고	
							합계		3,546	100.0	-	
							임대		841	23.7	-	
							분양	60㎡ 이하		996	28.1	-
								60 ~ 85㎡ 이하		1,615	45.5	-
								85㎡ 초과		94	2.7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30m이상 도로변 건축한계선 5m 후퇴지정 • 20m이하 도로변 건축한계선 2~3m 후퇴지정(1-9호선 보행자전용도로 제외. 단, 중2-5호선 건축한계선 지정) • 진입광장 인접 보행자 도로변 1층 벽면지정선 지정 • 보행의 연속성 확보가 필요한 구역에 1층 벽면한계선 5m 지정									

- ※ 1. 주용도는 당해 건축시설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함.
 2. 주용도의 비율은 건축물에 도입되는 용도의 종류에 따라 2가지 용도일 경우 50% 이상, 3가지일 경우 34% 이상으로 도입 용도 중 가장 많은 비율로 계획하여야함.
 3. 층수는 최고층수이며, 높이는 최고높이 기준으로, 다양한 높이계획을 권장함.
 4. 최고 높이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고 층수 조정 가능
 5. 1-4구역은 사업시행인가된 주거연면적 이내에서 주거연면적 비율 90% 미만 적용
 6. 1-4구역 임대주택은 최소 200세대 이상으로 계획 (단, 계획세대수 증가시 임대주택 건설 비율 준용하여 임대주택 추가 적용)
 7. 오피스텔 설치시 주거연면적 비율에 포함하여 산정(단, 뉴타운 추진구역 지원계획에 따른 '비주거시설내 오피스텔 10% 허용' 사항은 주거연면적비율 산정시 제외함)
 8.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에 의거 주용도가 업무시설일 경우 오피스텔 불허
 9. 주거연면적비율 외에 '재정비촉진지구 상업 및 준주거지역 주거비율 완화 기준'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 7.5%, 장기전세주택 2.5% 추가 가능하며 준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비율 산정시 전체 연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 (단, '뉴타운 추진구역 지원계획'에 따른 비주거시설내 오피스텔 10%는 준공공임대주택 7.5%, 장기전세주택 2.5%로 공급 가능함)

나) 변경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 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건 축 시 설 계 획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주된용도	용적률 (%)	건폐율 (%)	층수(지하) /높이	주거 연면적 비율(%)
변경	합계	144,594.0 (증 86.3)	-	95,091.8 (증 40.0)	-	-	520이하	54이하	-	-
	1-2	5,392.0	-	3,930.4	영등포동7가 76-5 일대	판매, 근린생활, 업무, 주거	610이하	52이하	32F(4)/120m	50미만
	1-3	8,407.0	-	5,767.1	영등포동7가 29-1 일대	판매, 근린생활, 업무, 주거	610이하	55이하	31F(5)/120m	50미만
	1-4	58,422.1 (증 86.3)	1-4-1	35,547.2 (증 40.0)	영등포동7가 145-8 일대	근린생활, 업무, 주거	370이하	52이하	35F(3)/120m	90미만
			1-4-2	2,998.0	영등포동7가 148-18 일대	종교시설	관계법령에 따름			-
	1-11	17,391.8	-	11,981.1	영등포동5가 30 일대	판매, 근린생활, 업무, 주거	770이하	58이하	38F(5)/130m	50미만
	1-12	16,256.0	-	10,578.5	영등포동5가 22-3 일대	판매, 근린생활, 업무, 주거	750이하	59이하	38F(5)/130m	50미만
	1-13	27,065.1	-	17,234.9	영등포동5가 32-8 일대	판매, 근린생활, 업무, 주거	398이하	59이하	33F(4)/99m	70미만
	1-14	11,660.0	-	7,054.6	영등포동5가 34-16 일대	판매, 근린생활, 업무, 주거	380이하	55이하	24F(4)/80m	70미만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전용면적 85㎡ 이하 - 세대수 × 60% 이상 - 주거연면적 × 50% 이상 - 임대주택 (200세대 이상) - 전용면적 40㎡ 이상 - 세대수 × 17% × 주거연면적비율 이상 또는 주거연면적 × 10% × 주거연면적비율 이상			구 분	전 용 면 적	세 대 수 (세 대)	비 율 (%)	비 고
						합계		3,546	100.0	-
						임대		841	23.7	-
						분양	60㎡ 이하	996	28.1	-
							60 ~ 85㎡ 이하	1,615	45.5	-
							85㎡ 초과	94	2.7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30m이상 도로변 건축한계선 5m 후퇴지정 20m이하 도로변 건축한계선 2~3m 후퇴지정(1-9호선 보행자전용도로 제외. 단, 중2-5호선 건축 한계선 지정) - 진입광장 인접 보행자 도로변 1층 벽면지정선 지정 - 보행의 연속성 확보가 필요한 구역에 1층 벽면한계선 5m 지정							

- ※ 1. 주용도는 당해 건축시설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함.
 2. 주용도의 비율은 건축물에 도입되는 용도의 종류에 따라 2가지 용도일 경우 50% 이상, 3가지일 경우 34% 이상으로 도
 입 용도 중 가장 많은 비율로 계획하여야함.
 3. 층수는 최고층수이며, 높이는 최고높이 기준으로, 다양한 높이계획을 권장함.
 4. 최고 높이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고 층수 조정 가능
 5. 1-4구역은 사업시행인가된 주거연면적 이내에서 주거연면적 비율 90% 미만 적용
 6. 1-4구역 임대주택은 최소 200세대 이상으로 계획 (단, 계획세대수 증가시 임대주택 건설 비율 준용하여 임대주택 추가 적용)
 7. 오피스텔 설치시 주거연면적 비율에 포함하여 산정(단, 뉴타운 추진구역 지원계획에 따른 '비주거시설내 오피스텔 10%
 허용' 사항은 주거연면적비율 산정시 제외함)
 8.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에 의거 주용도가 업무시설일 경우 오피스텔 불허
 9. 주거연면적비율 외에 '재정비촉진지구 상업 및 준주거지역 주거비율 완화 기준'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 7.5%, 장기전
 세주택 2.5% 추가 가능하며 준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비율 산정시 전체 연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
 (단, '뉴타운 추진구역 지원계획'에 따른 비주거시설내 오피스텔 10%는 준공공임대주택 7.5%, 장기전세주택 2.5%로
 공급 가능함)

※ 변경사유 : 영등포1-4구역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10)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변경)

구분	구역구분		현황(㎡)		계획(㎡)		공공용지부담	
	명칭	면적(㎡)	대지(㎡)	공공용지(㎡)	대지(㎡)	공공용지(㎡)	면적(㎡)	비율(%)
기정	합계	144,507.7	111,688.7	32,819.0	95,051.8	49,455.9	16,636.9	14.9
변경		144,594.0 (증 86.3)	111,775.0 (증 86.3)	32,819.0 (-)	95,091.8 (증 40.0)	49,502.2 (증 46.3)	16,683.2 (증 46.3)	14.9 (-)
기정	1-2	5,392.0	4,334.2	1,057.8	3,930.4	1,461.6	403.8	9.3
기정	1-3	8,407.0	6,775.2	1,631.8	5,767.1	2,639.9	1,008.1	14.9
기정	1-4	58,335.8	45,019.6	13,316.2	38,505.2	19,830.6	6,514.4	14.5
변경		58,422.1 (증 86.3)	45,105.9 (증 86.3)	13,316.2 (-)	38,545.2 (증 40.0)	19,876.9 (증 46.3)	6,560.7 (증 46.3)	14.5 (-)
기정	1-11	17,391.8	14,232.7	3,159.1	11,981.1	5,410.7	2,251.6	15.8
기정	1-12	16,256.0	12,677.6	3,578.4	10,578.5	5,677.5	2,099.1	16.6
기정	1-13	27,065.1	20,501.0	6,564.1	17,234.9	9,830.2	3,266.1	15.9
기정	1-14	11,660.0	8,148.4	3,511.6	7,054.6	4,605.4	1,093.8	13.4

※ 향후 각 구역별 사업시행시 추가 용적률 적용에 대한 공공시설 기부채납 기준제시를 통해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 시설 확보방안 검토 (사업주체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

※ 변경사유 : 영등포1-4구역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11)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변경없음)

12)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3)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 계획 (변경없음)

마. 재정비촉진구역 지정(변경) 결정 조서 (변경)

가) 영등포1-2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나) 영등포1-3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다) 영등포1-4 재정비촉진구역 (변경)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구 분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 경	영등포1-4 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동7가 145-8 일대	58,335.8	증) 86.3	58,422.1	

※ 변경사유 : 영등포1-4구역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2)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명 칭	면적(㎡)			비율(%)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58,335.8	증) 86.3	58,422.1	100.0	-
도시계획시설	소 계	19,830.6	증) 46.3	19,876.9	34.0	-
	역사공원	2,962.8	감) 3.4	2,959.4	5.1	-
	공공공지	1,708.7	증) 4.1	1,712.8	2.9	-
	도 로	15,159.1	증) 45.6	15,204.7	26.0	-
택 지	소 계	38,505.2	증) 40.0	38,545.2	66.0	-
	1-4-1	35,507.2	증) 40.0	35,547.2	60.9	-
	1-4-2	2,998.0	-	2,998.0	5.1	종교시설

※ 변경사유 : 영등포1-4구역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3)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변경)

- 도로 (변경없음)
- 철도 (변경없음)
- 공원 (변경)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경	2	공원	역사공원	영등포동7가 155-22 일대	2,962.8 (2,962.8)	감) 3.4	2,959.4 (2,959.4)	서울시고시 제2008-373호 (2008.10.23)	-

※ ()는 구역내 사항임

※ 변경사유 : 영등포1-4구역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 공공공지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경	1	공공공지	영등포동2가 435-4 일대	1,708.7	증) 4.1	1,712.8	서울시고시 제2005-411호 (2005.12.22)	-

※ 변경사유 : 영등포1-4구역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변경없음)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5)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변경)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변경)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	1-4	58,335.8	-	38,505.2	영등포동7가 145-8 일대	387	-	387	-	
변경	1-4	58,422.1 (증 86.3)	-	38,545.2 (증 40.0)	영등포동7가 145-8 일대	387	-	387	-	

※ 변경사유 : 영등포1-4구역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나) 건축시설계획 (변경)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 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건축시설계획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지하) /높이	계획 세대수 (세대)
기정	1-4	58,335.8	1-4-1	35,507.2	영등포동7가 145-8 일대	근린생활, 업무, 주거	52이하	370이하	35F(3) /120m	90미만
			1-4-2	2,998.0	영등포동7가 148-18일대	종교시설	관계법령에 따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전용면적 85㎡ 이하 - 세대수 × 60% 이상 - 주거면적 × 50% 이상			구분	전용면적	세대수 (세대)	비 율 (%)	비 고
						합계		1,221	100.0	
						임대	60㎡ 이하	200	16.4	
						분양	60㎡ 이하	249	20.4	
60~85㎡ 이하							681	55.8		
85㎡ 초과	91	7.4								
변경	1-4	58,422.1 (증 86.3)	1-4-1	35,547.2 (증 40.0)	영등포동7가 145-8 일대	근린생활, 업무, 주거	52이하	370이하	35F(3) /120m	90미만
			1-4-2	2,998.0	영등포동7가 148-18일대	종교시설	관계법령에 따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전용면적 85㎡ 이하 - 세대수 × 60% 이상 - 주거면적 × 50% 이상			구분	전용면적	세대수 (세대)	비 율 (%)	비 고
						합계		1,221	100.0	
						임대	60㎡ 이하	200	16.4	
						분양	60㎡ 이하	249	20.4	
60~85㎡ 이하							681	55.8		
85㎡ 초과	91	7.4								

- ※ 1. 주용도는 당해 건축시설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함.
 2. 주용도의 비율은 건축물에 도입되는 용도의 종류에 따라 2가지 용도일 경우 50% 이상, 3가지일 경우 34% 이상으로 도

입 용도 중 가장 많은 비율로 계획하여야함.

3. 층수는 최고층수이며, 높이는 최고높이 기준으로, 다양한 높이계획을 권장함.
 4. 최고 높이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고 층수 조정
 5. 오피스텔 설치시 주거연면적 비율에 포함하여 산정
 6.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에 의거 주용도가 업무시설일 경우 오피스텔 불허
- ※ 변경사유 : 영등포1-4구역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6)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없음)

(7)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 분	가 구	면 적(㎡)	획 지			비 고
			구 분	위 치	면 적(㎡)	
기 정	1-4	38,505.2	1-4-1	영등포동7가 145-8 일대	35,507.2	-
			1-4-2	영등포동7가 145-8 일대	2,998.0	종교시설
변 경	1-4	38,545.2 (증 40.0)	1-4-1	영등포동7가 145-8 일대	35,547.2 (증 40.0)	-
			1-4-2	영등포동7가 145-8 일대	2,998.0	종교시설

※ 변경사유 : 영등포1-4구역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8)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라) 영등포1-11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마) 영등포1-12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바) 영등포1-13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사) 영등포1-14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바.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144,507.7	증) 86.3	144,594.0	100.0	-
준주거지역	103,699.9	증) 86.3	103,786.2	71.8	
일반상업지역	40,807.8	-	40,807.8	28.2	

나) 용도지역 변경 사유: 영등포1-4구역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2) 용도지구 결정 조서 (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변경)

가) 교통시설 (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변경)

(1) 광장 (변경없음)

(2) 공원 (변경)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1	공원	문화공원	영등포동5가 43-3 일대	5,464.5	-	5,464.5	서울시고시 제2005-411호 (2005.12.22)	
변경	2	공원	역사공원	영등포동7가 155-22 일대	2,962.8	감) 3.4	2,959.4	서울시고시 제2008-473호 (2008.10.23)	

○ 공원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역사공원	공원 면적 변경 (2,962.8㎡ → 2,959.4㎡)	영등포1-4구역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3) 공공공지 (변경)

○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경	1	공공공지	영등포동2가 435-4 일대	1,708.7	증) 4.1	1,712.8	서울시고시 제2005-411호 (2005.12.22)	-

○ 공공공지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공공지	공공공지 면적 변경 (1,708.7㎡ → 1,712.8㎡)	영등포1-4구역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 다)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변경없음)
 - 사. 광고물 관리 계획 (변경없음)
 - 아.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자. 친환경건축물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차.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카.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변경없음)
 - 타. 무장애 생활환경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파. 유비쿼터스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하.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 조정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3.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참조
4.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사업과(☎ 02-2133-7224) 및 영등포구 도시재생과(☎02-2670-3528)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 (변경없음)



 재정비촉진지구계

PROJECT TITLE 사업명칭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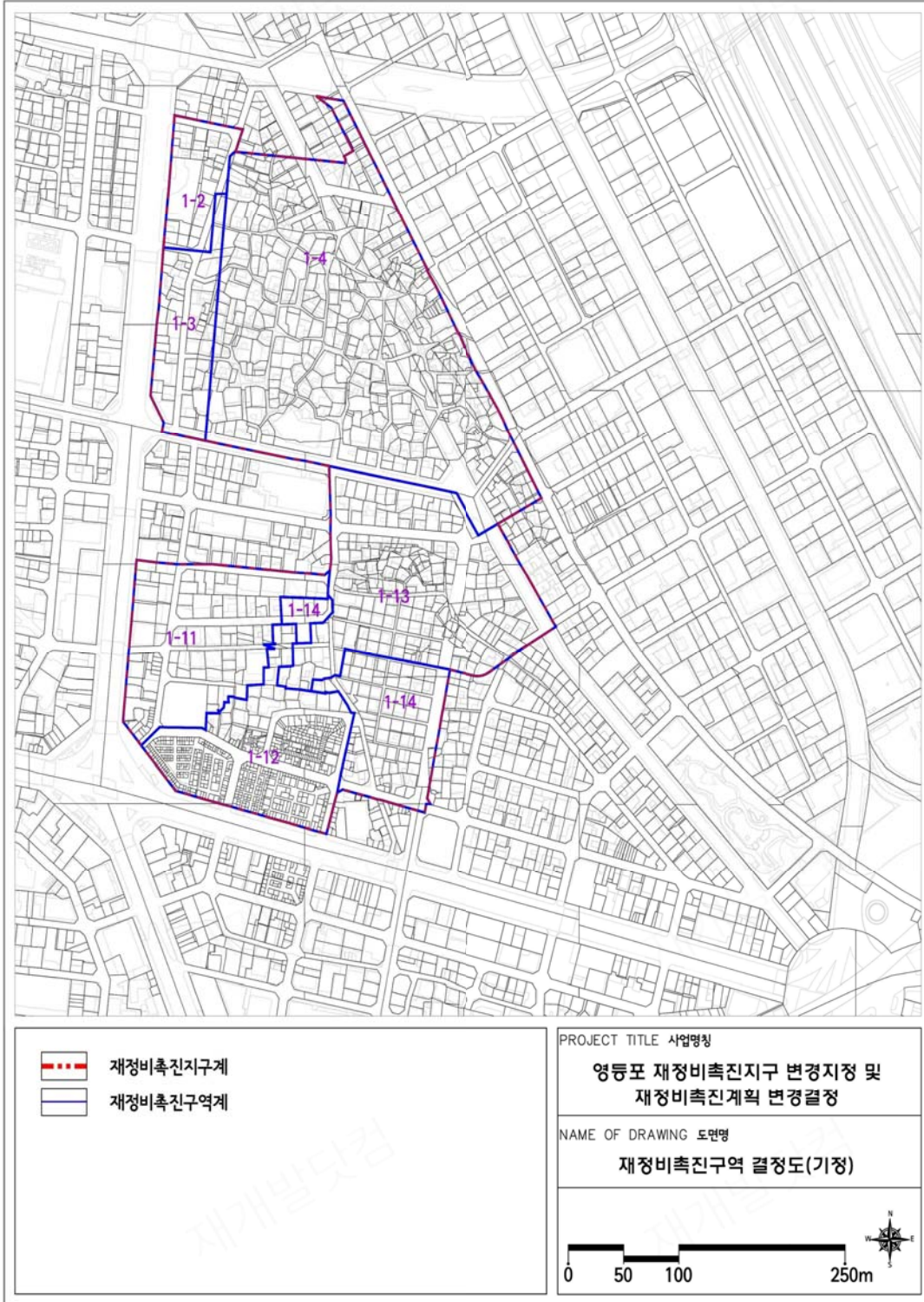
NAME OF DRAWING 도면명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기정)

0 50 100 250m



□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 (변경없음)



□ 토지이용계획도 (변경없음)



- | | |
|----------|---------|
| 재정비촉진지구계 | 종교용지 |
| 재정비촉진구역계 | 보행자전용도로 |
| 주상복합 | 공원 |
| 상업복합 | 광장 |
| 도로 | 공공공지 |

PROJECT TITLE 사업명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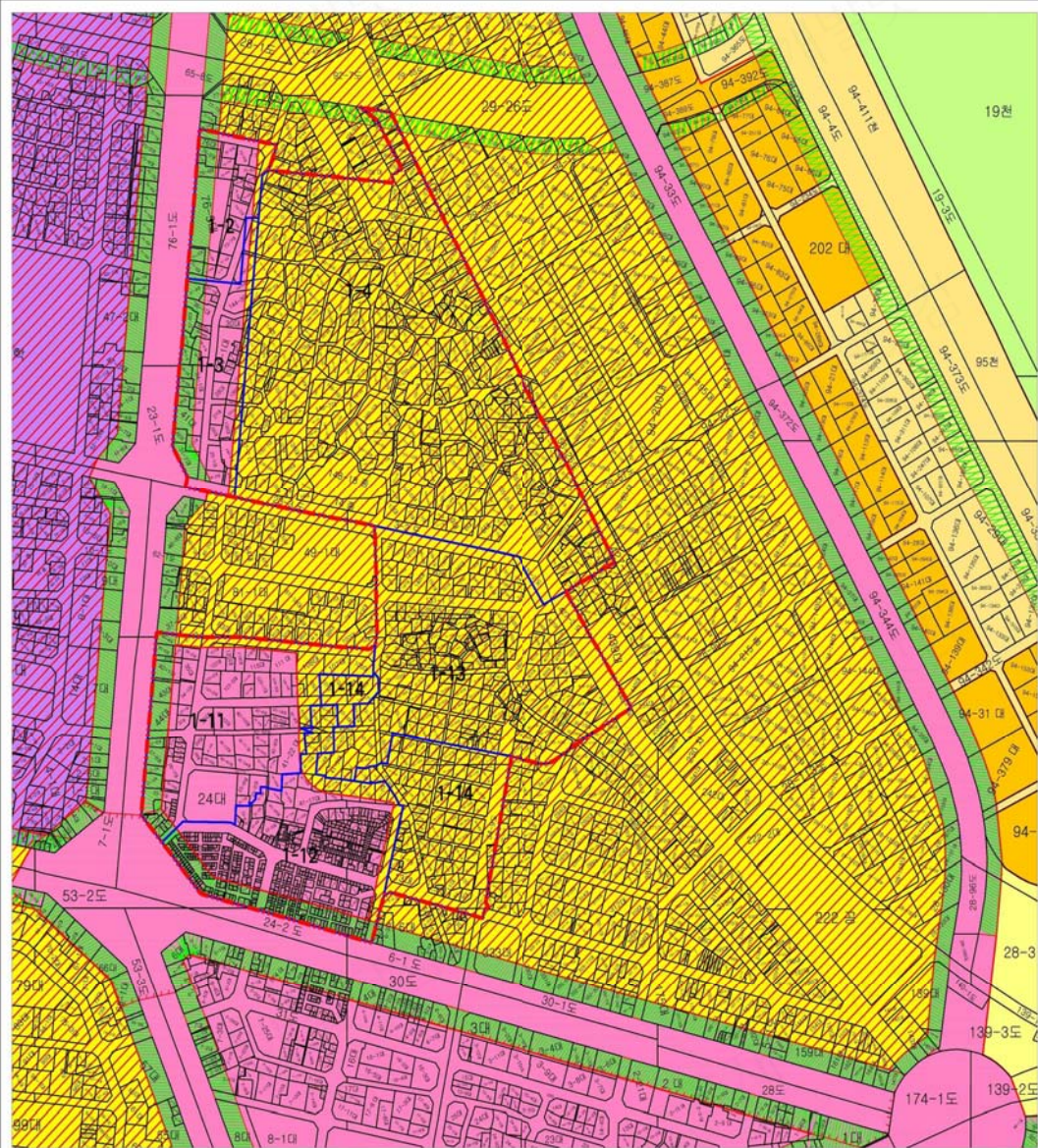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NAME OF DRAWING 도면명

토지이용계획도(기정)



□ 용도지역 및 지구 변경계획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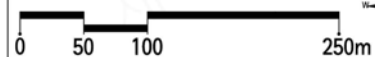
- | | | | |
|--|-------------------|--|---------|
| | 재정비촉진지구계 | | 일반상업지역 |
| | 재정비촉진구역계 | | 준공업지역 |
|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 자연녹지지역 |
| |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 | 일반미관지구 |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 중심지미관지구 |
| | 준주거지역 | | 방화지구 |

PROJECT TITLE 사업명칭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NAME OF DRAWING 도면명

용도지역 및 지구 변경계획도(기정)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변경없음)

